

## 제재내용 공시안

1. 조합명 : 부산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2. 8. 17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3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사실

○ 어업경영자금대출 취급업무 소홀

- 2급 선○○ 외 2명은 차주 양○○이 2016. 4. 26. 이후 어선어업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9. 4. 1. 금융어업자금대출 6,000천원을 신규로 취급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정책여신업무방법」 제96조(정의), 제109조(대출실행), 제116조(채무자 실태조사), 118조(대출금 중도회수)